

광 주 고 등 법 원

제 2 행 정 부

[2019누12462]

사 건 명 : 일시보상급여 청구의 소

원 고 : 원고1

목포시 이하 생략

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

피 고 : 수협중앙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

담당변호사 변호사2

변론 종결 : 2020. 7. 15.

판결 선고 : 2020. 9. 2.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
2. 원고(선정당사자)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, 이하 '원고' 라고만 한다)에게 172,080,656원 및 이에 대한 2019. 7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[원

고는 제1심에서 ○○○을 대위하여 일시보상급여 지급청구를 하다가, 당심에서 제1심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고,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(이하 '어선원재해보험법' 이라 한다) 제23조의3 제1항에 기한 진료비 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]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선정자들은 ○○시 ○○로 ○○○에서 ○○○○병원(이하 '이 사건 병원' 이라 한다)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이고, 피고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제9조에 의하여 ○○○○○장관으로부터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(이하 '어선원보험' 이라 한다)의 보험급여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

나. 어선원인 ○○○은 2015. 10. 14. 19:30경 어선인 ○○호(이하 '이 사건 어선' 이라 한다)를 타고 전남 ○○군 ○○면 ○○해상에서 어업 작업을 하던 중 로프에 머리를 맞아 의식저하 상태로 이 사건 병원에 옮겨져 입원한 후 현재까지 그곳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보존적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.

다,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 ○○○가 가입한 어선원보험에 기하여 피고의 ○○지역본부장은 2015. 10. 22. 이 사건 병원 앞으로 ○○○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내용의 요양결정통지서를 보냈다. 그 요양결정통지서에는 '요양의 구분:최초', '상병명:뇌진탕등, '결정 내용:입원 84일(2015. 10. 14.부터 2016. 1. 5.까지)' 등의 요양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.

라.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그 이후 2017. 10. 28.까지 ○○○에 대해 실시한 요양에 드는 비용(진료비)을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하였다.

마. 피고의 ○○지역본부장은 2017. 10. 25. 이 사건 병원에 ○○○의 요양기간을 2017. 10. 28.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요양결정통지서(이하 '이 사건 요양결정통지서' 라 한다)를 보냈는데, 이 사건 요양결정통지서에는 '기타 결정사항:일시

보상급여 대상자로 요양 결정함'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.

또한 피고의 ○○지역본부장은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(이하 '이 사건 안내문'이라 한다)을 보냈다

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일시보상급여안내

2. ○○군 수협 소속 ○○○ 소유 ○○호 피재어선원 ○○○은 사고일(2015. 10. 14.)이후 현재까지 2년이 지난 상태로 요양 중인 자로,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6조(일시보상급여)에서 규정하고 있는 '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'에 해당합니다
3. 따라서 본회는 피재어선원 ○○○을 일시보상급여 지급대상으로 결정하여 2017. 10. 28.까지 요양 종결하고자 하며 피재어선원에게 일시보상급여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더불어 동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향후 요양급여의 지급책임이 없어짐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바.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요양결정통지서 및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○○○에 대한 보존적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데, 2017. 10. 29.부터 2019. 6. 26.까지의 요양에 든 비용(이하 '이 사건 진료비'라 한다)은 합계 173,962,740원이다.

사.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인 2019. 12.경 및 2020. 5.경 ○○○을 대위하거나 직접 피고에게 172,080,656원의 일시보상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, 피고의 ○○지역본부장은 2019. 12. 30. 및 2020. 5. 8. '일시보상급여청구권은 어선원재해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(어선원 및 유족)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원고는 일시보상급여청구권이 없고, 같은 법 제35조가 규정한 대위청구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'는 이유를 들어 각 일시보상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.

아. 원고는 또한 2020. 5. 4. 이 사건 병원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, 피고의 ○○지역본부장은 2020. 5. 8. '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과 같이 ○○○에 대하여는 2017. 10. 28.까지의 요양이 승인되고 이후 요양이 종결되어 요양급여의 지급책임이 없다'는 이유를 들어 진료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.